



행복마을 구산동, 100년의 시작!

2023년 구산동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결과보고서



구산동 주민자치회



2023년도 구산동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보고서

2023년도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보고서 목차

인사말	02
1. 구산동 주민자치회 조직도	04
2. 구산동 주민자치회 구성 및 현황	05
3. 주민자치회 운영 경과보고	06
4. 구산동 주민자치회 감사보고	08
5. 2023년 구산동 주민자치회 사업계획서	12
6. 2023년 구산동 주민자치회 사업보고	13
7. 제3회 구산동 주민총회 결과보고	19
8. 2023년 구산동 활동 자료보고	26
9. 2023년 구산동 주민자치회 위원 활동 소감	38
10. 은평구 주민자치회 조례/ 구산동 운영세칙	41

회장님 인사말

이상훈 구산동 주민자치회장



'행복마을 구산동, 100년의 시작!'

참으로 바쁘게 달려온 2023년이었습니다. 4월 봄날 '수국이 있는 수국사' 식재행사를 시작으로 무장애 숲길, 꽃길 마을 관광 테마를 조성하였고, 여름에는 구산동 마을공원에 물놀이터를 개장하여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가을에는 '제3회 주민총회'와 '제7회 거북마을 한울대축제'를 함께 개최하여 천여명의 주민들이 더욱 알차고 풍성한 축제를 즐겼습니다. 또한 '봉산을 듣고 보고 만지고 느끼는 미래세대', '어르신들의 반찬만들기', '가족 다양성의 이해', '청소년 동아리 모임 활동',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등 영·유아를 비롯해 어린이, 청소년, 학부모,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다문화 가정까지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동 참여예산사업들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위원들 간 많은 소통과 화합이 이루어져 주민자치회가 보다 견고해지는 기회가 되었기에 앞으로의 활동도 더욱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산동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의제,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의제들을 실행하도록 힘쓰겠습니다. 2024년 청룡의 기운을 받아 힘차게 달려갈 구산동 주민자치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구산동 주민자치회장

이상훈

동장님 인사말

고덕환 구산동장

구산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산동장 고덕환입니다.



구산동의 2023년은 아주 풍성한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수국이 있는 수국사」 수국 식재 행사부터 「제7회 거북마을 한울대축제」, 「제3회 구산동 주민총회」까지 뜻깊은 행사들로 꽉 채운 일 년이었습니다. 이 풍성함 뒤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쓰시는 우리 구산동 주민자치회 여러분들의 노력과 땀방울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하며, 이 글을 통해 다시 한번 큰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주인이 되어 이끌어나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출발점입니다.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 라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씀처럼 주민 여러분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주민자치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구산동과 구산동 주민자치회의 발전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길 소망하며, 민관이 손잡고 함께 나아가는 주민자치를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은 갑진년(甲辰年), 푸른 용의 해라고 합니다.

푸른 용의 기운을 받아 힘차게 맞이할 구산동 주민자치회의 2024년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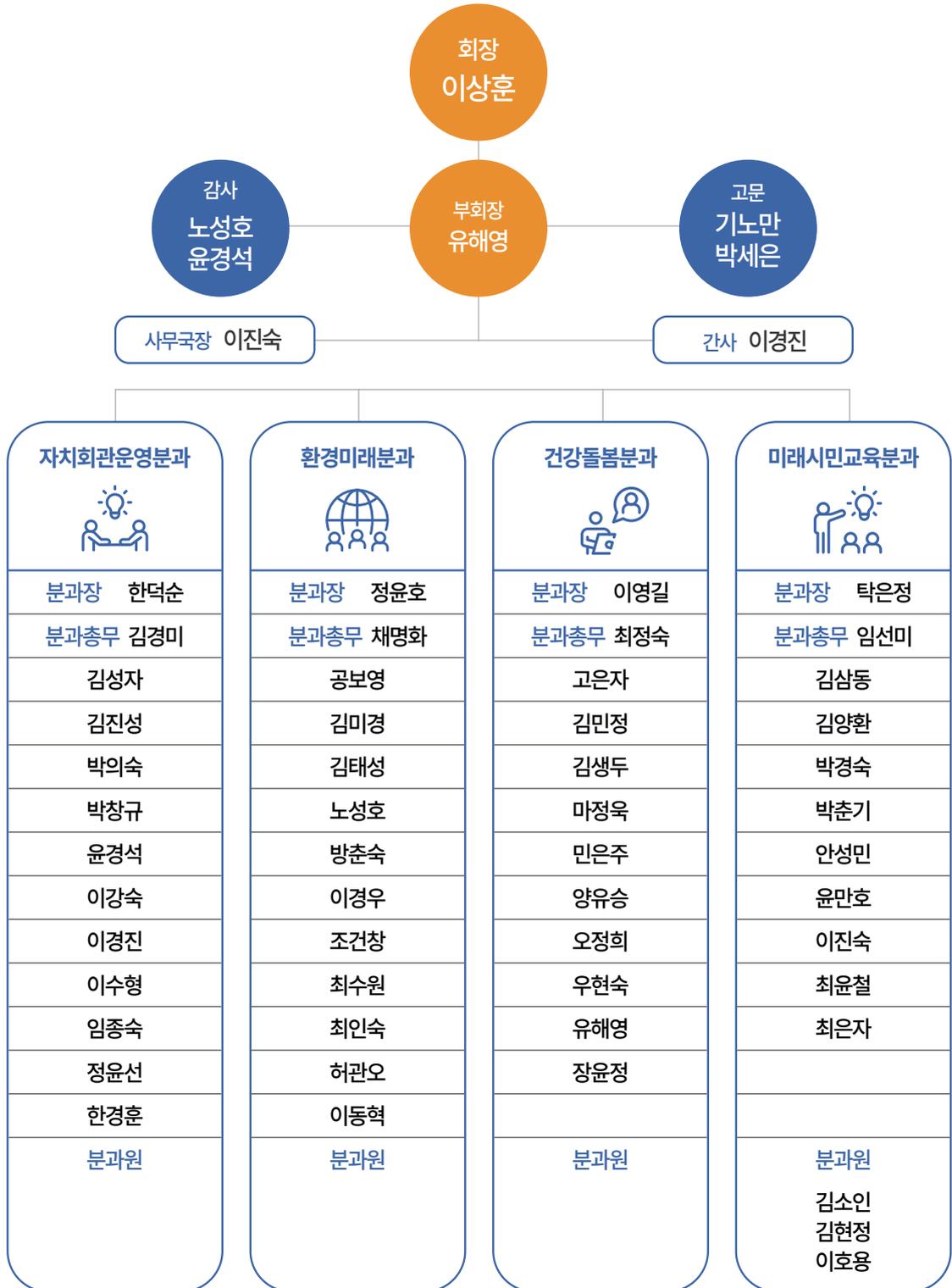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3. 12.

구산동장

고덕환

1. 구산동 주민자치회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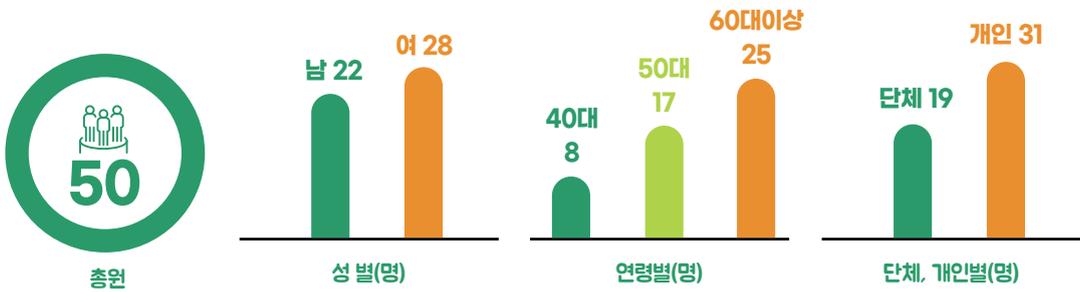


2. 구산동 주민자치회 2기 구성 및 현황

주민자치회란?

주민자치회는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참여문화를 통해 마을의 개선하고 싶은 사항을 주민들과 함께 논의, 결정,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주민을 대표하는 기구입니다. 주요 업무로는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 소식지 발간,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을 주민과 행정이 함께 협의해서 진행합니다.

주민자치회 위원 : 50명 (2023. 12. 01.기준)



주민자치회 임원진 현황 (2023. 12. 01.기준)

회장	부회장	감사	분과장	분과총무	사무국장	간사
이상훈	유해영	노성호 윤경석	한덕순, 정윤호 이영길, 탁은정	김경미, 채명화 최정숙, 임선미	이진숙	이경진

주민자치회 분과 현황 및 주요업무 (2023. 12. 01.기준)

분과명	주요업무	2024년 추진사업	사업비용	사업성과
자치회관운영 분과	자치회관 활성화 및 프로그램 기획 운영	가족다양성의 이해	4,500천원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우리민족의 전통예절과 풍습체험
		우리동네 워터파크	10,000천원	무더운 여름 유아·어린이들을 위한 마을 물놀이터
환경미래 분과	마을의 쾌적한 환경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봉산을 듣고, 보고, 만지고, 느끼는 미래세대	6,700천원	봉산 및 자연 속 체험을 통해 아이들의 심신발달과 건강증진 도모
		우리동네 소화기합	10,000천원	갑작스런 화재 시 초기진화를 위한 공용소화기합 설치
건강돌봄 분과	어르신, 장애인, 취약계층 등 주민의 건강과 복지사업 추진	어르신들의 반찬 만들기	10,000천원	65세이상 남성들을 요리교실
미래시민교육 분과	아동, 청소년, 청년 등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교육사업 추진	구산동 청소년자치위원회 조직 및 운영	5,500천원	다양한 활동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의 자기계발과 시민 의식 성장 도모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3,000천원	자녀와의 소통 방법 및 공감 워크숍

3. 구산동 주민자치회 경과보고

시 기	운영내용	세부 운영 내용
2023. 1.	2022년 마무리 및 2023년 사업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사업정산 및 마무리 - 구산동 2기 주민자치위원 위촉식 - 구산동 2기 임원선출 - 1차 정기회의 - 2023 희망 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전달 - 2023년 주민자치회 상반기 운영예산 교부
2023. 2.	2023년 사업계획 분과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사업계획 공유 및 논의 - 분과구성 워크숍
2023. 3.	주민의제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15일~16일 : 은평구 주민자치회 연합 워크숍 - 2023. 2분기 자치회관프로그램 접수 - 주민의제 접수
2023. 4.	수국 식재 행사 역량강화·의제발굴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 12일 : '수국이 있는 수국사' 수국 식재 행사 - 4월 25일 :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 - 4월 25일 : 의제발굴 워크숍
2023. 5.	마을돌아보기 은평구 참여예산 주민공론장 주민제안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월 1일~2일 : 마을돌아보기 - 5월 13일 : '어르신들의 반찬만들기' 사업 시작 - 5월 16일 : 주민제안 컨설팅 - 5월 20일 : 은평구 참여예산 주민공론장 - 5월 26일 : 구산동 참여예산 1차 주민공론장
2023. 6.	2024년 의제 부서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 13일 : 현혈캠페인(응암1동 사업) 동참 - 2024년 발굴의제 협치담당관 제출(총 18건) - 2023. 3분기 자치회관프로그램 접수
2023. 7.	주민총회 준비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 8일 : '구산동 청소년 동아리 모임 활동 지원' 사업 시작 - 7월 14일 : 1동 1대학(농협대학교) 협약식 - 2023년 의제 부서검토 결과 적정 12, 부적정 6 - 상반기 지도·점검 시행(주민참여협치과) - 주민총회 의제 확정 - 7월 25일 : 구산동 참여예산 2차 주민공론장 - 주민총회 준비위원회 1차회의 진행
2023. 8.	2023년 주민총회 사전투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총회 사전투표 진행 - 주민총회 준비위원회 2차회의 진행

2023. 9.	2023년 주민총회 개최 2023년 마을의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회 구산동 주민총회 개최 - 제7회 거북마을 한울 대축제 개최 - 은평구 참여예산 주민·청소년 총회 개최 - 은평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 2023. 4분기 자치회관 프로그램 접수 - 9월 22일 : '가족다양성의 이해' 사업 진행
2023. 10.	주민자치 어울림 한마당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 어울림 한마당 축제 개최 - 10월 4일 :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사업 진행 - 10월 14,21,28일 : '봉산을 듣고 보고 만지고 느끼는 미래세대' 사업 진행
2023. 11.	자매결연지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동네 소화기함' 사업 시작 - 자매결연지 농특산물 '절임배추' 직거래 행사 개최 - 하반기 지도·점검 시행(자치안전과) - 동 감사 시행(구청 감사과) - 주민자치회 시보조금(900만원) 정산
2023. 12.	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월 6일 : 주민자치회 감사 교육 - 12월 19일 : 성과공유회 개최 - 12월 21일 : 2024. 1분기 자치회관 프로그램 접수



4. 구산동 주민자치회 감사보고

감사종류	구산동 주민자치회 사업 및 회계 감사
감사대상	구산동 주민자치회
감사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자치회 조직과 운영내역 2. 주민자치회 각종 서류 및 회의록 3. 주민자치회 각종 회계 4. 주민자치회 사업 현황점검
조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자치회 조직과 운영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과 활성화 필요 2. 주민자치회 각종 서류 및 회의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협력회의록 미비 3. 주민자치회 각종 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이사항 없음 4. 주민자치회 사업 현황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이사항 없음
종합의견	구산동 주민자치회 사업감사 노성호, 회계감사 김태성은 주민자치회 사업 및 회계관련 전반사항을 점검표 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사업계획에 따라 성실히 실행하였으며 회계지출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집행하였음.

08

붙임. 1. 구산동 주민자치회 감사보고서 세부내용 1부. 끝

위와 같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12월 9일

제출자 : 은평구 구산동 주민자치회 사업감사 (노 성 호 (서명))

제출자 : 은평구 구산동 주민자치회 회계감사 (김 태 성 (서명))

은평구청장 귀중

구산동 주민자치회 세부 감사보고

감사 개요

근 거

- 서울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 15조
-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14조 4항

감사일시 : 2022년 12월 9일 15:00

감사장소 : 구산동 주민자치회 사무실

감 사 자 : 노성호 사업감사, 김태성 회계감사



감사 내용

1. 주민자치회 조직과 운영내역

연번	감사내용	감사결과
1	정기회의(월1회, 매월 네번째 화요일)	양호
2	운영진회의(월1회, 매월 세번째 화요일)	사회적거리두기 해제 이후 운영진들의 바쁜 일정으로 대면회의가 어려워 단체톡으로 진행해야 한 점이 아쉬움
3	분과회의(분과별 월1회)	그린미래분과 10,11월 회의 미진행
4	사무국회의, 민관협력회의 (필요시 상시 진행)	민관협력회의록 작성 권고
5	주민총회 준비위원회	- 6월29일 주민총회준비위원회 워크숍진행 - 대면회의 총2회 진행
6	주민총회 결과 정리와 주민공유	결과보고서 작성 후 공유 함
7	자치회관 운영	- 2022년 3분기 재개관 -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대화가 많거나 밀접접촉이 많은 강좌는 추후 재논의 하기로 함

09

2. 주민자치회 예결산 및 회계 처리과정

연번	감사내용	감사결과
1	주민자치회 예산수립(세입과 세출)의 적정성 : 예산과목 준수 여부 및 집행의 적정성	시정사항 없음
2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편성 및 집행여부	양호
3	예산편성시 모든 예산의 누락여부	해당사항 없음
4	주민자치회 명의의 전용통장 개설 및 사용 여부	통장 확인, 체크카드 확인
5	주민자치회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
6	주요 회계장부 비치 및 통장잔액 일치 여부	이상없음
7	수입원, 지출원 지정 여부, 신용보증보험 가입 여부	신용보증가입

연번	감사내용	감사결과
8	자치회관 수입 등 유료 프로그램의 수입 누락계상 여부, 영수증 발급의 적정성 확인	양호
9	지출서류(증빙서류 등)의 적정성	매건마다 증빙서류가 적당하게 증빙되어 있음
10	예산의 허위성 지출 여부	해당사항 없음
11	급여 및 활동비 지급의 적정성	적정하게 지급됨
12	소득세, 주민세의 원천징수 이행 여부	이행확인
13	근무시간에 따른 간사활동비 지급의 여부(기타소득세 납부여부)	양호

3. 행정서류와 각종 문서, 장부 및 직인관리

연번	감사내용	감사결과
1	정기회의, 분과회의, 운영진회의 회의록 비치	양호
2	주민자치회 위·해촉 사임 대장	양호
3	직인대장과 문서대장	양호
4	직인의 보관관리	적정관리
5	세무서 고유번호증 보관관리	보관 관리되어 있음
6	사업계획서 및 사업운영 필요서류	양호
7	연 1회 재물조사 실시 여부, 조사표 부착여부	양호

4. 주민자치회 사업(주민세, 참여예산) 현황점검

연번	감사내용	감사결과
1	구산동 청소년위원회 조직 및 운영 (주민세균등분환원사업)	- 11월16일 임명장 수여 - 12월7일 성과공유회 진행으로 사업 마무리
2	60+ 시니어모델아카데미	- 모델워킹 및 메이크업수업 총4회진행 - 8월9일 성과공유회진행으로 사업 마무리
3	봉산을 들고, 보고, 만지고, 느끼는 미래세대	- 10월 8~9/15~16/22~23 총3모듬으로 진행
4	사원씩뚝	- 이·미용 쿠폰발행 400장 중 현재 231장 사용
5	책읽기, 어렵지 않아요	- 독후활동, 부모공감워크숍, 어느나라 음식까지해봤니 총3프로그램 진행 - 11월8일 성과공유회 진행으로 사업 마무리

5. 총평

사업감사



올 해는 구산동 주민자치회가 조직 된 이후 처음으로 사업을 진행하였기에 크고 작은 시행착오 있었으며 상반기 두 번의 선거로 6월에서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기에 사업 참가자들을 모집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분과위원 모두가 분과 진행 사업에 적극 참여하지 못한 점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주민자치위원 모두 적극적인 관심과 활동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감사



지출에 따른 증빙서류가 적정하게 증빙되어 있습니다. 단, 상반기 코로나19 재유행과 두 번의 선거로 인해 사업 진행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해 예산의 상당 부분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바 예산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참고로 주민자치 회비에 관한 부분도 점검하였으며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은평구청장 귀중



5. 2023년 구산동 주민자치회 사업계획서

사업명	은평구 구산동 주민자치회 2기 운영 및 사업 추진계획		
일반 현황	구성시기 : 2023. 1. 1.	주민자치위원 수 : 50명	
	분과구성 : 분과수 5개, 총 50명(외부분과원 포함)		

사업목적

- 제1기 자치사업의 성과를 계승하고 제2기 주민자치회 활성화 및 주민이 결정하는 동자치계획의 수립과 실행

사업 개요

사업기간 : 2023. 1. 1. ~ 12. 31.

주요내용

- 주민 스스로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2023년 참여예산 사업 실행
- 주민자치회 2기 구성을 통해 분과활동을 활성화하고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및 발전 도모
-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자치회관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예산액 총 38,000천원

12

통장 내역	세부내용	소요예산(단위:천원)			
		계	지원금(구비)	자부담	
주민 자치회 운영· 사업비	세부계획	통계목	5,000	5,000	
	일반 운영비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700	700
			사무관리비	800	800
		행사운영비	분과운영 등	1,240	1,240
			주민자치역량강화	760	760
	행사실비보상금	분과운영 등	640	640	
		주민자치역량강화	860	860	
	의제 발굴 및 주민 총회	세부계획	통계목	15,000	15,000
		일반운영비	의제발굴	800	800
			주민총회	10,000	10,000
성과공유회			500	500	
의제발굴			2,200	2,200	
행사실비보상금		주민총회	900	900	
		성과공유회	600	600	
동축제		마을문화축제	18,000	18,000	
합 계			38,000	38,000	

운영진	회장	이상훈	연락처	010-9193-1913	사무국장	이진숙	연락처	010-9174-1844
	간사	이경진	연락처	010-9992-8844	동담당자	박미현	연락처	02-351-5154

6. 2023년 구산동 주민자치회 사업보고

은평구 참여예산 동 지역사업 9건- 프로그램사업

자치회관운영분과



1 가족다양성의 이해 (예산 : 4,500천원)

추석차례 지내기 및 전통놀이체험

2023. 9. 22.(금) 15:30~17:30
다문화가정 어린이 16명
우리 민족 차례지내기 및 전통놀이 체험



13



다문화 요리 체험

2023. 11. 14.(화) 10:00~12:00
관내 여성 주민 13명
중국인에게 배우는 중국 가정식 요리 체험



제로웨이스트 라이프 기우위기와 에너지

2023. 11. 21.(화)
다문화가정 15명
설겅이바와 태양열 자동차 만들기



자치회관운영분과

2 우리동네 워터파크 (예산 : 10,000천원)



마을축제와 함께 하는 우리동네 에어놀이터 운영

2023. 9. 9.(토) 11:00~16:00

지역 유아 및 어린이

마을공원 내에 물놀이터가 신설되어 마을 축제 기간 중 에어놀이터로 대체 운영



환경미래분과



1 봉산을 들고, 보고, 만지고, 느끼는 미래세대 (예산 : 6,700천원)

봉산 및 거북골근린공원에서의
숲 체험 및 생태 관찰

2023. 10. 14./21./28.(토)
10:00~12:00

관내 유아·어린이 66명

우리 동네 가까운 숲인 '봉산'과
'거북골근린공원'에서 또래친구들과 관계
형성을 통해 자연과 사람과의 깊은 교감을
갖는 경험을 갖는다.



15

2 우리동네 소화기함 (예산 : 10,000천원)



봉산산책로및사전신청장소포함총 23곳
2023. 12. 8.(금) 11:00 :
소방 안전 교육 실시
봉산 산책로 및 마을 골목 입구 등에
공용 소화기함을 설치하여갑작스런화재 시
초기진화를 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건강돌봄분과

1 어르신들의 반찬 만들기 (예산 : 10,000천원)



2023. 5. 12.(금)~10.27.(금) 총 12회
 관내 65세이상 남성 15명
 밑반찬부터 명절음식까지 레시피를 통한
 요리교실
 65세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요리 강습을
 진행하여 스스로 건강하고 균형잡힌 식생활을
 유지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함



16





1 구산동 청소년자치위원회(터틀크루) 조직 및 운영 (예산 : 5,500천원)

2023. 7. 8.(토)~10. 7.(토)
11:00~13:00 총 8회
마을 탐방 및 글쓰기, 체험 프로그램 진행
구산동 청소년자치위원회'터틀크루'를
구성하여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마을 의제발굴 등 청소년 자치 활동
경험을 제공하고자 함



17

2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예산 : 3,000천원)



2023. 10. 4.(수)~11. 8.(수) 10:00
12:00 총 6차시
관내 학부모 10명
서로 돕는 마을 교육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가 청소년
자녀와 진솔하게 소통하고 행복한 가정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소년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함



시설사업

거북골 숲 체험장 CCTV설치 (예산 : 2,000만원)

2023. 4.

거북골 숲 체험장을 주로 이용하는 초등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CCTV설치와 꽃나무 식재로 안전과 아름다운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등 특화사업

수국이 있는 수국사 (예산 : 4,000만원)



2023. 4. ~ 6.

2023. 5. ~ 7.

주말 수국 물주기 봉사

봉산 무장애숲길 입구인 수국사 주변에 수국 꽃나무를 식재하여 '수국이 있는 수국사'라는 테마마을을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함

7. 구산동 주민총회 결과보고

- 일 시 :** 2023. 9. 9.(토) 오전 11시
- 장 소 :** 구산초등학교 운동장
- 보고사항 :** 2022년 감사보고 및 2023년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운영현황(활동)보고
- 의결사항 :** 구산동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의결 - 2024년 은평구 참여예산 동 지역사업
- 참여대상 :** 2022년 8월 3일 기준 만 16세이상 구산동 주민



주민총회 준비과정

▶ 의제발굴을 위한 분과워크숍 : 3월 11일, 18일 총2회 진행

▶ 주민의제 접수 : ~3월 31일까지

▶ 주민총회 준비위원회 워크숍 : 6월 29일 진행

- 주민총회란 무엇이며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에 대한 역량강화



▶ 주민총회준비위원회 1차회의 : 7월 28일(목) 19:00

- 주민총회 공고문 논의
- 슬로건, 홍보방법 논의



▶ 주민총회준비위원회 2차회의 : 8월 16일(화) 19:30

- 영상, 홍보물 업체 선정 논의
- 업무분장논의
- 홍보방법 논의



▶ 사전투표 진행

- 온라인투표 : 8월 25일 ~ 31일 (7일간)
- 투표소운영 : 8월 29일 ~ 31일 (3일간) 구산동 주민센터 3층 주민자치회 사무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주민자치회 공고 제2023-01호

제3회 구산동 주민총회 개최 공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 19조 및 「구산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 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 3회 구산동 주민총회를 개최하오니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민총회 개요〉

- 일 시 : 2023년 9월 9일(토) 11:00
- 장 소 : 구산초등학교 운동장
- 보고사항 : 2022년 감사보고 및 2023년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활동보고
- 의결사항 : 2024년 은평구 참여예산 동(洞) 지역사업 결정

〈자치계획 결정을 위한 투표〉

- 사전투표기간 : 2023. 8. 28.(월) ~ 9. 6.(수) 10일간
 - 온 라 인 투표 : 참여의 큰숲 가입
 - 상설현장 투표 : 구산동 주민센터 3층 주민자치회실 및 거점 현장투표소 운영
 - 사전투표 개표일시 : 2023. 9. 8.(금) 11시~ 개표 마감 시까지(참관인 사전신청 가능)
- 투표결과보고 : 당일 현장 발표 및 한 달 이내 은평구청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공고

〈주민총회 참여 자격〉

- 16세 이상(2007. 9. 9.이전 출생)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
 - 구산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구산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 구산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자

〈개회요건〉

- 주민총회는 개최일 한 달 전(2023. 8. 9.) 주민등록상 인구 31,582명 중에서 0.5%인 158명 이상의 투표로 개최한다.

〈기타〉

- 위 내용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세칙」에 따라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다.
- 주민총회 사업 선정 후 예산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에서 조정·결정한다.
- 문의: 구산동 주민자치회 02-351-4132

2023년 8월 9일

구산동 주민자치회장



주민총회 마을의제발굴 부서검토 결과

구분	사업명	금액(천원)	검토부서	적정/부적정
시설	봉산입구 벌레 퇴치기 설치	16,000	자원순환과	적정
	깨끗하고 안전한 등교길 마을길~(보도정비)	50,000	도로과	적정
	스쿨존 통학버스 정거장 설치	-	검토불가	
환경	분리수거함 설치	-	자원순환과	부적정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	주민참여협치과	부적정
	거점별 음식물 건조분쇄기 설치	-	자원순환과	부적정
	봉산 숲 지킴이「봉산수비대」	7,000	주민참여협치과	적정
	나무사랑 그림 그리기 대회	5,000	주민참여협치과	적정
	봉산을 듣고 보고 만지고 느끼는 미래세대3	10,000	주민참여협치과	적정
프로 그램	어르신들의 반찬 만들기	10,000	주민참여협치과	적정
	그램	6,000	주민참여협치과	부적정
	반려식물 아카데미	4,000	주민참여협치과	적정
	뽕송뽕송 세탁	5,200	주민참여협치과	적정
	힐링 템플스테이	1,200	주민참여협치과	부적정
	내 손안의 세상(어르신 스마트폰 교육)	4,000	주민참여협치과	적정
	청소년 동아리 모임활동 지원	6,000	주민참여협치과	적정
1동-1대학	도시농부-가족과 함께하는 힐링텃밭	15,000	주민참여협치과	적정
동특화	수국이 있는 수국사	30,000	공원녹지과	적정

No. 2024. 구산동 참여예산 동 지역사업 투표 용지					
[각 사업별 동의, 비동의 중에 기표]					
분야	연번	2024년 구산동 지역사업 목록	예산 (천원)	기표란 [●] 채움	
				동의	비동의
동특화	1	수국이 있는 수국사 [수국사 주변 수국군락 조성지를 정비 및 확장, 관광테마마을 조성]	30,000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시설	2	깨끗하고 안전한 등교길 마을길~ [구현초등학교 통학로(갈현로15길 보도구간)보도 및 울타리 정비]	30,000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환경	3	도시농부-가족과 함께하는 힐링텃밭 [1동(구산동)-1대학(농협대학교) 프로그램으로 도시농업 운영 및 교육]	14,000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	봉산을 듣고 보고 만지고 느끼는 미래세대 [봉산 숲 생태 관찰 및 오감놀이와 자연환경 지킴]	10,000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프로그램	5	청소년 동아리 모임활동 지원 [역사, 독서, 예술 등 다양한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지원]	6,000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6	어르신들의 반찬 만들기 [65세이상 남성들이 스스로 먹거리를 만들어 본인의 건강과 삶의 활력소를 찾는 기회 제공]	10,000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주민총회 사업 선정 후 예산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에서 조정 결정합니다.					
				동의	비동의
* 귀하는 위 주민총회 상정된 자치계획 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해당 사업 실행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개인정보이용동의 : 주민총회 정족수 확인용, 중복투표 방지 및 발송용으로 사용 (개인정보는 자료 확인 후 3개월 이내 폐기)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아래 양식에 하나라도 기입하지 않은 경우 무효표 처리함]					
이름				성별	남 <input type="radio"/> 여 <input type="radio"/>
전화번호	010-	-	(※ 휴대폰 번호가 틀릴 경우 투표 및 경품추첨 결과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생년월일					
주소					
구산동 거주 <input type="radio"/> 직장 <input type="radio"/> 지역 단체소속(생활주민) <input type="radio"/>					
16세 ~ 19세 <input type="radio"/> 20대 <input type="radio"/> 30대 <input type="radio"/> 40대 <input type="radio"/> 50대 <input type="radio"/> 60대 <input type="radio"/> 70대 이상 <input type="radio"/>					
※ 2023년 8월 9일 구산동 인구 수 31,582명 기준, 158명(0.5%) 이상의 주민투표를 통해 사업 선정 ※ 최종결과발표: 9월 9일(토)11시 구산동 주민총회 / 은평구청 홈페이지 및 구산동 주민센터 게시판 공고					

2024년 자치계획 투표 결과

- 2024년 은평구 참여예산 동(洞)지역사업 1억원
- 투표대상 : 2023년 8월 9일 기준 16세 이상 구산동 주민
- 투표참여인원 : 총 544명(온라인투표 63명, 사전투표 포함 현장투표 481명)

사업별 찬반투표(찬성 · 반대)

연번	프로그램사업	득표율	사업내용	예산액(천원)	결과
소계					
1	수국이 있는 수국사	88%	수국사 주변 수국군락 조성지를 정비 및 확장, 관광테마마을 조성	30,000	승인
2	깨끗하고 안전한 등갯길 마을길~	97%	구현초등학교 통학로(갈현로15길 보도구간) 보도 및 울타리 정비	30,000	승인
3	도시농부-가족과 함께하는 힐링텃밭	90%	1동(구산동)-1대학(농협대학교) 프로그램으로 도시농업 운영 및 교육	14,000	승인
4	봉산을 들고 보고 만지고 느끼는 미래세대	96%	봉산 숲 생태 관찰 및 오감놀이와 자연환경 지킴	10,000	승인
5	청소년 동아리 모임활동 지원	93%	역사, 독서, 예술 등 다양한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지원	6,000	승인
6	어르신들의 반찬 만들기	97%	65세 이상 남성들이 스스로 먹거리를 만들며 본인의 건강과 삶의 활력소를 찾는 기회 제공	10,000	승인





결과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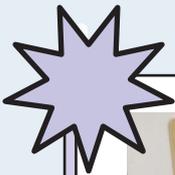
투표결과발표 자치계획 의결

프로그램 사업명	동의	비동의	무투표	결과
수국이 있는 수국사	480(88%)	63	1	승인
깨끗하고 안전한 풍고길 마을길	528(97%)	15	1	승인
도시농부·가족과 함께하는 힐링텃밭	468(90%)	48	8	승인
봉산을 즐기고 보고 먼지고 느끼는 미래세대	522(96%)	18	4	승인
청소년 동아리 모임활동 지원	505(93%)	33	6	승인
어르신들의 반찬 만들기	528(97%)	14	2	승인

8. 2023년 구산동 주민자치회 활동사진



●○○ 2023.11.1.(일) - 봉산해맞이행사



○○● 2023.1.10.(화) - 제2기 임원선출선거



구산동 주민자치회 임원선거 결과 표

구분	구산동 주민자치회	구산동 주민자치회	구산동 주민자치회	구산동 주민자치회
이름	이성훈	유해명	노성호	윤경석
득표수	15	10	10	10
비고	구산동 주민자치회 회장	구산동 주민자치회 부회장	구산동 주민자치회 감사	구산동 주민자치회 감사

●●● 주민자치회 각종 회의



2023.3.15.(수)~3.16.(목)

●●●

- 은평구 주민자치회 연합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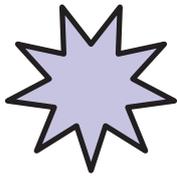


●●● 2023.4.12.(화) - 수국식재행사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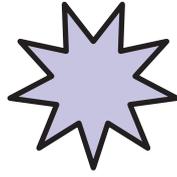


●●●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워크숍



30





2023.5.1.(월)~5.2.(화) - 마을돌아보기



32



●●● 2023. 9. 9(토)
- 제7회 거북마을 한울 대축제





●●● 2023. 9.23.(토)
- 은평구민한마음체육대회



●●● 2023.10.7.(토)

- 주민자치 어울림 한마당 축제



2023.12.19.(화)

- 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 송년의밤

●●●



9. 구산동 주민자치회 위원 소감

2023년에는 주민자치회가 안정화가 되면서 많은 사업들을 문제 없이 잘 실행하고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1동(구산동)-1대학(농협대학교) 사업의 일환인 ‘도시농부-가족과 함께 하는 힐링텃밭’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친환경 먹거리를 재배하고, 그 수확물을 이웃과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프로그램이라 저도 기대가 큰 사업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이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훈 회장



올 한해는 저에게는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어르신들의 반찬 만들기’를 통해, 요리를 경험하지 못한 65세 이상 남성 어르신들이 건강한 음식을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반찬 걱정을 안 하게 되었다는 어르신, 배우자가 아플 때 대신 요리를 해준다는 어르신, 칼질을 처음해본다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이 프로그램을 하길 정말 잘했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6개월동안 어르신들을 위해 애써주신 이영길 분과장님과 건강 돌봄분과위원님들 모두 고생하시고 애쓰셨습니다.

내년에도 주민들의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해영 부회장



38

이번 주민총회와 마을 축제를 준비하면서 밤늦게까지 일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되어 매우 보람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즐겁고 행복한 구산동 마을이 될 수 있도록 파이팅하겠습니다.

- 이경진 간사



‘어르신들의 반찬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한 6개월 동안 어떤 메뉴를 진행해야 어르신들이 더 맛있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설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서툰 칼질에 다치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지만, 대단한 집중력으로 요리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덕분에 무탈히 12회차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어르신들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으로 정도 많이 들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며 내년에도 우리 건강돌봄분과 ‘어르신들의 반찬 만들기’ 파이팅하겠습니다.

- 이영길 위원



작년에 이어 올해도 봉산을 듣고 보고 만지고 느끼는 미래세대를 통해 아이들이 숲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숲체험을 통해 자연환경의 소중함과 숲 생태계 연결성을 깨달아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키울수 있는 더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또 다른 환경미래분과 사업으로 우리동네 소화기함을 설치하였으며 갑작스런 화재 발생시 주민 누구나 초기 진화를 하는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 해주시는 우리 분과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구산동주민자치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운호 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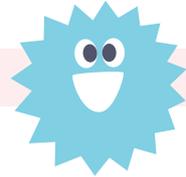


미래시민교육분과는 아동 청소년들이 삶과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탕이 되고자 모인 분과입니다. 23년 프로그램을 통하여 아동 청소년들이 구산동의 앞날을 이끌어 갈 주인 의식과 시민 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활동을 도와 내가 사는 동네가 어떤 곳인지 어떤 것이 불편하고 어떤 모습이 보기 좋고 살기 좋은지를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습니다.

아동 청소년들은 학기 중에는 학업이 우선이라 여름방학의 주말에 활동하다 보니 더위와 휴가 등의 악조건들이 있었지만 두 달여 간의 활동에도 개근 학생이 2명이나 되었습니다. 가장 더웠던 주말 무더위에도 수국사 봉산으로 이어진 탐방 활동도 신나게 하고 사진도 멋지게 찍어 올리며 구산동에 사는 뿌듯함도 나누었습니다. 구산동에 학교가 10여 개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동 청소년들이 모여 놀고 싶 수 없다는 것의 민간시설이기는 하지만 진관동 글램핑장 체험을 통해 청소년 공간의 필요성을 요구하였습니다. 글램핑장 체험은 저나 아이들이나 무척 즐거운 시간으로 기억됩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의제 발굴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실천해야 하는지 깨닫고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소망합니다.

엄마 아빠가 내 세금이 어떻게 자신들에게 돌아오고 쓰이는지 알게 되는 시간이었기를 소망합니다. 주민이 낸 세금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참여예산 사업을 실행할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한 미래시민교육분과 위원님과 분과 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아동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이다 보니 어려운 여건이 속출하였지만, 여러모로 도와주려 애써주신 행정과 주민자치회 사무국에 감사드립니다.

- 탁은정 위원



안녕하세요
자치회관운영분과 총무 김경미입니다.
지난 한 해 되돌아 보니 한 여름 수국사로 물 주러 갔던 일, 아이들과 선인장 심었던 일 특히 “가족 다양성의 이해” 프로그램으로 아이들과 차례상 차려보기, 주민과 외국요리 만들기, 다문화가정의 아이들과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 등에 참여하며 뿌듯함과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처음 주민위원이 될 때 주민센터에서 미처 보지 못하는 부분을 “디딤돌”이 되어 민과 관이 아름답게 가는 길을 생각하였으나 부족하였던 부분 스스로 반성하여 봅니다.
요즘음 빠르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구산동의 거북이처럼 느리지만 모두가 행복한, 장수하는 구산동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 김경미 위원



지역 의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지역에 대한 사랑, 더 나아가 이웃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숙 사무국장님. 지난 임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안성민 위원

2023년 주민자치회의 마을 축제, 체육대회, 역량 세미나, 분과 사업과 평가회 등 즐거운 추억들을 한 아름 선물로 받은 한 해였습니다. 구산동 주민 사업과 주민자치회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 김미경 위원



안녕하세요? 구산동주민자치회 미래시민교육분과에 소속된 최윤철입니다.

지난 22년말 서부경찰서 응암지구대장을 끝으로 34년간의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구산동 주민으로서 뭔가 보람있는 일을 해보자는 소소한 생각으로 지원하여, 운 좋게도 구산동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퇴직 전에는 전라북도 임실과 녹번동, 응암1,2,3동, 역촌동 등 주민자치회 주관 주민총회에 그 지역의 경찰 대표로서 참석은 하였지만, 이렇게 직접 자치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처음이라 먹먹함과 더불어 생소하기도 하여 허무하게 그냥 시간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안되겠다는 고민 끝에 위원님들과 조금이라도 더 빨리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회의에는 꼭 참석해야 하겠다고 다짐하며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알고 지냈던 몇 위원님의 도움과 동기부여로 용기를 얻어 원만하게 활동하며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미래시민교육분과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열심히 배우면서 한걸음 한걸음 활동을 이어온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 회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미래시민교육분과장님 등 모든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쾌적한 문화와 환경에서 건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미약하나마 큰 보탬이 되도록 아동, 청소년 분야에서 열심히 지원하고봉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 최윤철 위원



2023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되돌아보면, ‘가족 다양성의 이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이 점점 잊혀져 가는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서 뿌듯하고 감사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2024년 갑진년에는 더욱 더 왕성한 활동으로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산동 주민자치회 파이팅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이수형 위원

초등학생들은 어린이집, 유치원을 졸업하면서 숲 체험 활동을 접할 기회가 많지않다고 합니다. ‘봉산을 들고 보고 만지고 느끼는 미래세대’를 통하여 친구들과 함께 숲을 관찰하고 자연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덩달아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기분을 느꼈으며 아이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해준 거 같아 보람을 느꼈습니다.

- 채명화 위원



10. 은평구 주민자치회 조례/ 구산동 운영세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3.09.26 조례 제 962호
(전부개정) 2018.09.27 조례 제1231호
(일부개정) 2019.07.18 조례 제1275호
(일부개정) 2020.07.09 조례 제1351호
(전부개정) 2021.12.09 조례 제1480호
(일부개정) 2023.07.03 조례 제1588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자치계획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자치회관”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의시설과 그에 포함된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종교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OO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 2 장 주민자치회의 설치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치계획 등을 세우고 이를 자체적으로 이행하는 업무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행정사무의 협의
3.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등 행정사무의 수탁 업무
4.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한 업무
5. 동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업무
6.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위원회와 연계가 필요한 업무
7. 그 밖에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등 위 각 호에 준하는 것으로 자치 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제6조(정원)

위원의 정원은 50명 내외로 한다.

제 3 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7조(위원선정관리위원회)

- ① 위원의 선정 절차 수행 및 관리 업무를 위하여 해당 동에 위원선정관리위원회(이하 “선정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선정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동장이 위촉한다.
 1. 동장 추천자 2명 이내
 2. 관내 직능·교육·문화·예술·그 밖의 지역단체 추천자 3명 이내
- ③ 선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선정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선정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 ⑤ 선정관리위원회는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

- ① 위원은 모집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 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4.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 ② 위원은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이하 “주민자치학교”라 한다)을 위원 선정 전 6시간을 이수한 사람이야 한다. 주민자치학교 이수의 유효기간은 임기 내로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선정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4. 다른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5.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으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제9조(위원의 위촉)

- ① 구청장은 선정관리위원회가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제6항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선정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이 될 사람을 공개추첨하고, 각 호별 예비자를 순위를 정하여 공개추첨한다.
 1. 정원의 100분의 60이상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2. 정원의 100분의 40이하는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한 사람
- ③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때 40대 이하가 100분의 1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선정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추천된 사람의 명단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구청장은 제4항의 명단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⑥ 구청장은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자가 있으면 그 순서대로, 예비자가 없으면 제2항에 준하여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위원을 위촉하거나 제2항에 해당하는 결원의 경우 운영세칙에 따라 선정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전임자가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 ⑦ 동장은 위촉된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그 위촉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⑧ 해당 동에서 선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해당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되고, 비례대표로 선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거주지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 다만, 고문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않는다.
- ⑨ 그 밖에 위원 위촉 및 주민자치회 구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추첨 없이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연임하는 위원은 임기 중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 또는 사전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자에 한정한다.

43

제11조(위원의 대우)

- ① 위원과 분과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위원에게는 은평구 지역소식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지역신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의무)

-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제18조에 해당하는 회의 및 활동 참석
 3. 1개 이상 분과위원회 참여 및 활동
 4.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
- ②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 ③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아니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위원이 제8조제1항의 자격 요건을 위배하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
 2. 위원이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3. 위원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퇴를 밝히고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직무태만 또는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등의 각종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의무를 지속적으로 다하지 않은 경우
- ③ 위원에게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주민자치회에 해당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그 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 장 주민자치회의 운영

제14조(주민자치회의 장)

- ① 주민자치회는 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이하 “자치부회장”이라 한다)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④ 자치부회장은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자치회장 궐위 시 선임 자치회장 선출 시까지 자치회장직을 수행한다. 다만,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사임, 사고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자치회장 및 부회장을 재선출할 수 있으며 이들의 임기는 전임 회장 및 부회장의 남은 임기로 한다.

44

제15조(감사)

- ① 주민자치회는 회계와 사업 집행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를 2명 이내로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인을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 ② 주민자치회는 감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간사 또는 사무국)

-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 또는 호선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의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의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④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분과위원회)

- ① 주민자치회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8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 ③ 분과위원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분과위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각종 활동, 사업계획 수립, 결속력 강화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 ⑤ 그 밖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18조(회의)

- ①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동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다만, 정기회의는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격월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자치회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들과 동장에게 회의 개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동장 또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에 출석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격월로 개최할 수 있다.
- ⑥ 그 밖의 회의 개최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9조(주민총회)

-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정족수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시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주민총회 개최 여부 및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자치계획의 결정
 3. 참여예산사업 및 주민세환원사업의 제안, 선정
 4. 그 밖의 지역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부터 총회 안건의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 ④ 주민자치회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안건에 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 ⑤ 구청장 및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한 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20조(주민자치협의회)

- ①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협의회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 5 장 자치계획

제21조(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

- ①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자치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하여야 한다.
- ③ 자치계획은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 의결로 입안되며 주민총회에서 보고 및 결정한다.
- ④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치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제출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검토 및 반영 여부를 주민자치회에 전달해야 한다.
- ⑤ 자치계획은 다음 주민총회에서 새로운 자치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 ⑥ 자치계획 실행과 홍보를 위해 홍보물품 및 기념품을 제작하고 배포할 수 있다.

제22조(자치계획의 구성)

자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세부 계획으로 구성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동 행정사무 협의 및 수탁업무 추진계획
3. 자치회관 운영계획
4. 분과별 사업계획
5. 참여예산사업 및 주민세환원사업 계획
6.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제 6 장 자치회관

제23조(설치 등)

- ① 자치회관은 동 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회관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 ② 자치회관의 동별 명칭은 ○○동 자치회관으로 한다. 다만, 갈현제1동과 응암제1동은 ○○동문화의집으로 한다.

제24조(기능)

- ① 자치회관은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의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제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의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집앞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25조(시설 및 프로그램)

- ① 구청장은 자치회관이 제24조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 ③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동 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26조(운영)

- ① 자치회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회관의 운영”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
- ②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3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30조에 의하여 징수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⑤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경쟁력 유도와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발표대회 및 작품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행사의 운영비와 시상금 등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⑥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으며, 우수 자치회관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시상할 수 있다.
- ⑦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 내 자치회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2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장의 의견을 들어 자치회관의 운영을 해당동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자원봉사자)

-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회관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29조(강사)

- ① 자치회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회관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30조(사용료 등)

- ① 자치회관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회관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
-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별표1에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⑤ 구청장은 제31조제1항에 의한 이용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은 별표2와 같다.
- ⑥ 사용료 등의 반환은 별표3와 같이 한다.
- ⑦ 제2항에 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⑧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한다.

제31조(이용 등)

- ① 주민은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②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할 때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③ 주민은 제3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④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2조(주민참여)

-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회관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3조(수당)

-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보고)

- ① 동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자치회관의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동장은 제30조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장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제35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48

-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의욕 고취,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해당 동 주민자치회는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공간 지원 및 그 밖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교육,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해 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조직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 ①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요청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한다.

제 8 장 보칙

제37조(감독)

-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를 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38조(보험)

구청장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구성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전부개정으로 이전 부칙 삭제-----

부 칙<제1480호, 2021. 12.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주민자치회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구성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및 동 참여예산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보며, 새로이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동 참여예산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및 재산 등을 승계한다.

제4조(주민자치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주민자치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주민자치협의회로 본다.

제5조(자치회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자치회관은 제23조에 따른 자치회관으로 본다.

부 칙<제1588호, 2023. 7. 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세칙

2021.1.21. ~ 2.4.	내규수립 의견수렴	자치위원 온라인 설문
2021.2. 5.	내규수립 내용	자치위원 워크숍
2021.2.15.	운영 세칙 초안 정리	운영세칙개정위원회
2021.2.19.	운영 세칙안 논의	운영세칙개정위원회
2021.3. 4.	운영세칙 제정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2022.3.15.	운영세칙 개정안 검토	주민자치회 운영진회의
2022.3.22.	운영세칙 개정안 의결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2022.7.26.	운영세칙 부칙 개정안 의결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2022. 7. 26.



구산동 주민자치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한「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0조(운영세칙) 규정에 따라 은평구 구산동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구산동 주민자치회는 동 지역사회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조직이다.

제3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산동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라 한다.

제4조(소재지) 주민자치회는 구산동 주민센터 내에 둔다.

제5조(기본이념) 주민자치회는 주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며 책임지는 민주적 원리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6조(운영원칙) ① 제5조 기본이념에 따른 주민자치회 운영원칙은 조례 제3조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 보장 및 자치활동 활성화
 3.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문화 진흥
 4. 주민 안전과 편의 증진 모색
 5. 주민 화합과 세대통합 및 지역 간 협력 도모
 6. 정치적 이용 목적 배제
- ② 주민자치회 위원 명단, 회의록, 재정 현황, 위·수탁 사업 등 주민자치회가 주관하는 모든 사항은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 기능을 수행한다.

- ①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 ②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 ③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등 동 지역회의가 수행하는 기능
- ④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 협의
- ⑤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자치회관 운영 등 동 행정사무 위탁·수탁 처리
- ⑥ 그 밖에 각종 교육, 행사, 미디어, 기금 등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제2장 주민자치회

제8조(주민자치회 위상)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 주민의 결정권을 확대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 대표조직이다.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한「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0조(운영세칙) 규정에 따라 은평구 구산동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위원) ①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과 선정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모집공고와 인적사항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위원중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조례에 따라 예비자가 있으면 그 순서대로 위촉한다.
- ④ 예비자가 없을 경우 공개모집과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위촉하거나, 신속한 충원이 필요한 경우 조례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선정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통해 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 1. 조례 제12조(위원의 의무)에 따른 위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 2.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연간 3회) 및 분과회의(연간 3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 단, 사전 통보 연간 2회 시 예외로 인정한다.
- 3. 주민자치회 위원이 분과에 소속되지 아니하거나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 4. 주민자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청탁·금품 수수 등의 비위행위를 한 경우
- 5. 주민과의 갈등을 유발하여 현저한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
- 6. 주민자치회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한 경우
- 7.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주민자치회 위원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촉을 결의하고,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촉을 결의할 경우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해촉 절차와 방법은 운영진회의에서 결정한다.

52

제11조(사임 및 해임) ① 운영진,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분과위원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 사임서를 자치회장 또는 운영진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임서 제출 즉시부터 사임한 것으로 한다. 단, 사임서 제출이 불가할 경우, 본인의 의사임을 증명하면 사임한 것으로 인정한다.

- ② 운영진으로서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주민자치회 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하는 경우 본 세칙 제26조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진 임기) ① 주민자치회 운영의 원활함을 위해 운영진을 둔다.

-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진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단,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1. 주민자치회 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한다) 1명
 - 2. 주민자치회 부회장(이하 ‘자치부회장’이라한다) 1명
 - 3. 감사 2명(단, 운영진회의 출석은 필요에 따른다.)
 - 4. 간사 1명
 - 5. 분과별 분과위원장 1명
 - 6. 분과별 분과 총무 1명
 - 7. 사무국장 1명

제13조(운영진 선출) ①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및 감사는 정기회의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 선출하되,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 투표에 따라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단, 단독 후보인 경우 무기명 찬반 투표를 하여 다수득표 시 선출한다.

- ② 분과위원장은 해당분과 자치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단독 후보의 경우 무기명 찬반 투표를 하여 과반 득표자를 선출한다.

- ③ 분과 총무는 해당 분과 자치위원 중에서 1명을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
- ④ 사무국장과 간사는 운영세칙 제16조, 17조항을 따른다.

제14조(운영진 임무)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단, 분과위원회 회의(이하 '분과회의'라 한다)는 분과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 ② 자치부회장은 자치회장을 보좌하며 자치회장 부재 시 자치회장 업무를 대행한다.
-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관장하고 마을공동사업을 수행하며, 분과총무를 지명한다. 분과위원장 부재 시 분과총무가 분과위원장 업무를 대행한다.
- ④ 감사는 주민자치회 사업과 회계를 포함한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회의에 보고하고, 구청장에게 회기의 다음 달 20일 이내에 제출하고 외부에 공개한다.
- ⑤ 분과 총무는 분과회의 결정사항과 분과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 ⑥ 사무국장(또는 사무원)은 주민자치회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운영계획과 자치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의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 ⑦ 사무국장과 간사는 운영세칙 제16조, 17조항을 따른다.

제15조(궐위와 후임선출) ① 자치회장, 운영진 궐위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후임자를 결정한다.

1. 자치회장 궐위 시 조례 제14조에 따라 자치부회장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자치회장 궐위 시 30일 이내에 제13조에 따라 신임 자치회장 선출시까지 자치회장직을 수행한다.
2. 자치부회장 궐위 시 30일 이내에 제13조에 따라 후임자를 선출하되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이면 분과장 중 연장자가 남은 임기동안 자치부회장직을 수행한다.
3. 감사와 분과위원장 궐위 시 남은 임기에 관계없이 30일 이내에 제13조에 따라 선출하고 전임자의 남은 임기동안 그 직을 수행한다.

제16조(사무국) ①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와 자치회관 위수탁 사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 간사, 자원봉사자 등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 ③ 회장과 부회장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무국을 지휘 감독하여 주민자치회를 운영한다.
- ④ 사무국은 실무 진행시 해당 내용을 주민자치회 임원·운영진 또는 위원과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전체 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⑤ 간사는 정기회의에서 주민 또는 자치위원 중 1명을 자치회장이 선임 또는 호선하며,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사와 자원봉사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⑥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역량강화 지원
 2. 기록물 생산 및 보존
 3. 예산, 회계 및 지출 실무
 4. 정기회의, 분과회의 등 각종 회의 개최
 5.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개최
 6. 주민자치회 사업 기획 및 실행 지원
 7. 분과활동 활성화 및 운영 지원
 8. 자치회관 위수탁 사무
 9. 그 외 주민자치회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지원 등

제17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간사 및 자원봉사자의 보조를 받아 주민자치회 운영 실무를 총괄한다.

-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모집 및 선정 절차에 따라 채용한다.
 1. 구산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자치회 예산 집행 및 사업 기획 등에 관한 실무능력을 갖춘 사람
3. 주민과 소통하며 구산동 주민자치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
- ③ 사무국장에게는 활동기록부의 내용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활동강화와 주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분과위원회의 수와 분과원 수는 제한이 없으나, 자치회관 운영 분과는 필수로 구성하고 주민의 의견과 사업의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구성한다.
-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장을 선출하고, 분과위원장은 총무를 지명한다.
- ④ 각 분과는 다음 역할을 수행한다.
 1. 해당 분과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실행
 2. 행정사무 위·수탁 발굴
 3. 마을 공동사업 수행
- ⑤ 분과위원회의 분과이동은 연 1회 기간을 두어 실시한다.
- ⑥ 분과원(주민)은 분과회의 개최 정족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9조(회의) ① 주민자치회는 회무·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의를 둔다.

1. 주민총회
2. 정기회의
3. 임시회의
4. 운영진회의
5. 분과회의
6. 민관협력회의
- ② 주민자치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주민 누구나 참관 가능하다. 단, 참관인의 발언권은 제한한다.

54

제20조(주민총회)

- ①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연1회 개최한다. 다만, 필요시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주민총회 개최 여부 및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② 주민총회는 개최일 한 달 전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하되, 만 16세 이상의 주민(구산동 거주, 사업자, 단체소속 등 생활주민 포함)이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주민총회의 의결 정족수는 전체 주민의 0.5%(서면투표 등 사전투표 포함) 이상으로 한다.
- ③ 주민자치회는 각 분과위원회가 수립한 사업계획을 조정 협의한 후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자치계획을 확정한다.
- ④ 주민총회 개최 시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및 나이를 알 수 있는 참석자 명부를 작성한다.
- ⑤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회장 명의로 소집한다.
- ⑥ 주민총회는 자치계획을 보고 받고,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치계획을 결정한다.
-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현수막 게시, 입주자대표회의 방송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한다.
- ⑧ 주민총회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한 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21조(정기회의) ① 주민자치회의 전체회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한다. 다만, 공휴일 또는 부득이한 경우 정기회의 날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격월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위 ①항에 따른 정기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운영세칙 및 세칙 시행에 필요한 부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
 2. 주민자치회 사업계획, 예산의 결정 및 변경
 3. 주민자치회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의 승인
 4. 운영진의 선출 및 해임, 위원의 위촉 해제 요구
 5.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6. 안건의 의결사항(위임된 사항 포함) 중 집행에 관한 사항
 7. 운영진회의 및 분과회의에서 부의된 사항
 8. 수입·지출 내역을 포함한 자치회관의 운영결과보고의 승인
 9. 그 밖에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의 운영 및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
- ③ 안건 심의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분과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분과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제22조(운영진회의) ① 운영진회의는 매월 정기회의 개최 전 개최한다.

- ② 자치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 운영진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운영진회의는 제12조에 따른 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여 정기회의에 상정한다.
 1. 정기회의에 부의할 사항
 2. 동장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3. 기타 주민자치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4. 정기회의 의결사항(위임된 사항 포함) 중 세부 집행에 관한 사항
 5. 주민자치회 운영 및 분과별 진행과정 공유, 상호조정 및 협의

제23조(분과위원회 회의) ① 분과회의는 마을의제를 실행하는 실질적 집행기구로 월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시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격월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분과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정기회의 개최 전 운영진회의에 부의한다.
- ③ 분과회의는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분과원을 정원으로 매월 정기회의 이전에 1회 이상 개최하며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사업 수행을 위하여 회의 개최가 필요할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위원인 분과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임시 분과회의를 개최한다.
- ④ 분과에서 결정한 사항은 매월 정기회의 개최 전 운영진회의에 부의한다.
- ⑤ 주민자치위원이 아닌 분과원 등의 경우 정기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고 발언권은 1회, 3분으로 제한한다.
- ⑥ 분과 활동은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감사, 간사, 사무국장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참석할 수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다.

제24조(민관협력회의)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자치활동 지원을 위해 민관협력회의를 둔다.

- ② 민관협력회의는 동장, 팀장, 동 담당자,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간사, 사무국장 등 주민자치활동을 지원하는 협력체계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 ③ 회의는 수시 또는 분기별로 개최하며, 동장 또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할 수 있다.

제25조(주민설명회)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사업 평가 및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 ②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때에는 설명회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 목적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26조(회의 의결) ① 위원은 자치회장을 제외하고 1인 1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회장은 가부동수의 경우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모든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이 회의 참석 불가할 시, 사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위임받은 위원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단 1인 초과 위임은 불과하다.
- ④ 대면회의가 불가할 경우 서면결의 등을 통한 비대면 의사표시로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자치계획 수립) ① 운영진회의는 분과별 연간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 ② 분과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
 2.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3. 월별 추진계획
 4. 평가계획
 5. 예산 조달 및 집행 방법
 6. 홍보 및 협업, 주민참여 및 타 단체 협조사항 등
- ③ 주민자치회 및 구청이 주관하는 정책공유회 및 사업계획을 심의할 때에는 단체별 중복된 사업과 동 전체로 확대해야 하는 사업을 찾아내어 통합하거나 확대할 것을 권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확정한다.
- ④ 선정된 우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관 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정기회의에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28조(자치회관 운영) ① 자치회관 운영은 자치활력소 분과위원회의 연간 사업계획에 의거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주민들이 자치회관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에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 ③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부터 제 34조까지,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10조부터 제13조의4까지 자치회관 운영세칙을 준용한다.

제29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① 주민자치회에서 작성 및 수·발신 공문서 서류는 공문서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한다.

- ② 주민자치회는 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회의록
 2. 주민자치회 직인대장
 3. 문서접수 대장
 4. 문서등록 대장
 5. 각종 회계장부
 6. 사업계획서
 7.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서류
 8. 위원 위·해촉 대장
 9.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서류

제30조(직인) ① 주민자치회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한다.

- ② 직인은 회장이 관리하며 직인대장을 비치하여 직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그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 ③ 회장은 간사에게 직인을 관리하게 할 경우, 직인 날인 사항을 회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자치회관의 운영

제31조(자치회관 운영 원칙) ① 자치회관 운영은 자치회관 운영 분과위원회의 연간 사업계획에 의거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주민들이 자치회관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에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 ③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4조 내지 제 14조, 같은 조례시행 규칙 제3조 내지 제7조 자치회관 운영세칙을 준용한다.

제4장 재정 및 예산 관리

제32조(사업비 집행·공개) ① 주민자치회에 교부되는 사업비는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집행결과는 사업 종료 후 사업비 교부 기관 및 부서에 정산보고 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33조(재정) ① 주민자치회의 재정은 수강료, 교부금, 수익금, 수탁금, 찬조금으로 충당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강료는 자치회관 이용자에게 받는 프로그램 이용료
2. 교부금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예산
3. 수익금은 자치회관 운영 및 바자회 등 수익사업 예산
4. 수탁금은 근린자치 실현을 위해 수탁 받은 사업 예산
5. 찬조금은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자 주민 및 임원 등이 후원한 예산

제34조(회계 및 지출) ① 재정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사무국장이 관리하되, 매월 정기회의 시 수입·지출 내역을 보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총회 시 수립한 수입 및 지출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정지출은 별도의 서식에 따라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자치회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여야 하며 긴급 또는 경미한 지출은 우선 및 구두 승인 후 집행하고 자치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회계연도) 주민자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36조(감사수감) ① 자치회장은 위탁받은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대한 해당 기관의 감사를 받을 경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② 자치회장은 감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감사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기관이나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2022. 7. 26.)

제1조(시행) 본 운영세칙은 주민자치회의 정기회의를 거쳐 2022. 3. 22.. 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규) 운영세칙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민자치회 관련 운영 사항은 내규로 정하고 내규는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정하며 이외의 사항은 일반 민주주의 정신에 따른다.

제3조(경과조치) 주민자치회는 조례 전면 개정에 따라 운영세칙을 개정한다.

제4조(회비) ① 회비는 매월 10,000원으로 정하되, 납부계좌로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으로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경우 회비를 집행할 수 있다.

1. 민관협력 행사 (마을 축제, 체육대회, 자매 결연지 방문, 적십자 성금,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장학금 지급 등) 시 단체 경비로 지급한다.
 2. 애경사에는 현금 100,000원 (또는 상당의 화환)을 지급 한다. 단, 위원 2년 임기 중 1번을 원칙으로 하며 직계가족(부모, 자녀)및 배우자에 한함. (※ 부모에는 배우자의 부모 포함)
 3. 경상비로 처리할 수 없는 사업비 (착불을 포함한 택배비, 세탁비, 수수료 등) 현금성 경비
 4. 정기회의 식비(1인 8,000원) 초과분에 대해 집행할 수 있다. 단, 초과분은 50%(1인 4,000원)로 제한한다.
- ③ 신규 위원은 위촉된 달로부터 회비를 납입하며, 회비 납입 위원은 기존 위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④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기 납부한 재정 등은 주민자치회 발전을 위하여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⑤ 경미한 지출 및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결정되는 사항은 선 결제 후 주민자치회에 보고한다.
- ⑥ 회계연도가 끝나면 잔액에 대해 소진을 원칙으로 한다.(기부, 후원, 자치위원에 대한 답례품 등)
- ⑦ 회비는 매월 정기회의에서 보고하며 매년 12월 별도의 감사를 거쳐 보고한다.

행복마을구산동, 100년의 시작!

2023년 구산동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결과보고서

발행일 2023년 12월 31일

발행처 구산동 주민자치회